

우리금융그룹

국내 가업승계 현황 및 정책지원 동향

2024. 8. 29

- 국내 중소기업 경영자의 급속한 고령화로 승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기존의 친족승계 중심에서 기업승계 등으로 방식이 점차 다각화되는 추세
 - * 통상 가업승계는 후계자에 따라 친족승계, 친족외 승계(전문경영인 등), 기업승계(M&A 등)로 구분
 - 국내의 경우 여전히 친족승계 비중이 높으나 저출산, 승계 기피 등에 따른 후계자 공백 확대로 기업승계(M&A 등)가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상황
- **△** 최근 국내에서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
 - 정부 정책은 크게 '기업승계(M&A) 활성화'와 '친족승계 원활화' 2가지 방향에 초점
 - *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24.7월)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25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기업승계특별법」을 제정할 예정
-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2000년대부터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가업승계 활성화에 공동 대응해왔으며, 금융회사들은 이를 신규 수익원 발굴 기회로 적극 활용
 - *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 법, 제정(08년), 사업승계인계센터 도입(11년) 등
 - ① 승계지원 펀드 조성[자산운용·투자], ② M&A 중개·자문[IB], ③ 중소기업 오너 대상 자산관리 (ex. 사업승계신탁, 가업승계 컨설팅 등)[WM] 등이 대표적 수익모델화 사례
- 가업승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아젠다이자, 국내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높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회사들도 이익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
 - 향후 우호적 정책환경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융그룹 입장에서는 계열사 시너지를 발휘하기 쉽고, 특히 중소기업 고객 신규유치나 고객 retention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장

작성자: 금융혁신연구실 김신진 연구원(02-2173-0558)



목 차

I. 국내 가업승계 현황	· 1
Ⅱ. 국내 가업승계 정책지원과 최근 동향 및 평가	· 3
[붙임 1] 가업승계 개념 및 유형	9
[붙임 2] 일본의 가업승계 및 중소기업 M&A 현황	12
[붙임 3] 일본의 가업승계 지원정책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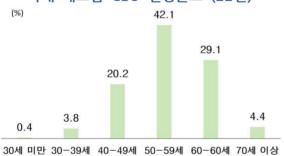
I. 국내 가업승계 현황

- ❖ 가업승계란 기업의 경영권 또는 소유권을 다음세대 경영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후계자 속성에 따라 친족승계, 친족외 승계(전문경영인, 임직원), 기업승계(M&A 등)로 구분
 - * 협의의 개념으로는 자녀·친인척 등 가족에게 물려주는 친족승계를 지칭하며, 광의의 개념에서는 친족외 승계와 제3자에게 매각하는 M&A 등 기업승계까지를 포괄(※「붙임1」참조)

■ 국내 중소기업 CEO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업승계가 주요 경영현안으로 부상

-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22년)은 제조업 55.3세, 서비스업 53.0세로 **제조업** 부문 고령화가 보다 심각한 상황
 - * 국내 제조업 60세 이상 CEO 비중은 최근 10년간 2.4배 급상승(12년 14.1%→ 22년 33.5%)
 - * 일본 대비 CEO 연령이 약 5~10세 낮은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고령화 가속화로 양국 간 격차는 좁혀지는 추세
-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가업승계는 개별기업만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사회적 이슈
 - *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0.9%, 매출의 46.8%를 담당(21년 기준)
 - * 가업승계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향후 10년간 소멸 예상기업 32.5만개, 실직자 307만명, 매출액 손실은 794조원에 달할 전망(중소벤처기업연구원 추정치)

국내 제조업 CEO 연령분포 (22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제조업 60세이상 CEO 비중 (업체수 기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국내에서는 여전히 친족승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후계자 부재나 상속세 부담에 따른 승계 포기로 친족외 승계나 기업승계(M&A 등)에 대한 관심도 확대 중
 - 친족(자녀)승계 수요(83.4%)가 압도적으로 높으나¹⁾, 높은 상속세 부담*이 현실적 걸림돌
 - * 우리나라의 명목 최고 상속세율(50%)은 OECD 회원국(평균 26.5%) 중 일본(55%)에²⁾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실질적 상속세 부담은 최고 수준³⁾

¹⁾ 중소기업중앙회, "2022 가업승계 실태조사" (※ 별도 언급이 없는 경우,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설문내용은 동 실태조사의 결과)

²⁾ 일본은 배우자 상속시 법정 상속분(상속재산의 50%)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해주고 있고,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간주)을 적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산취득세(상속인별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실질적 세부담은 우리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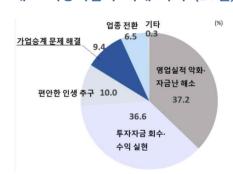
- *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승계과정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막대한 조세부담'(76.3%)을 가장 많이 언급
- 친족승계의 대안으로 전문경영인(33.3%), 기업승계(29.2%), 임직원(12.5%) 순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폐업을 고려하는 비중도 16.7%에 달함
- 기업매각, 전문경영인 승계 비중 확대는 저출산으로 **승계대상의 절대적 수가 적고**, 개성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트렌드로 **가업승계 의사가 없는 경우**(제조업·지방 기피, 전문직 진출 등)**가 급증**한 데 주로 기인
 - * 한국 M&A거래소에 따르면 21년 기준 전체 매도희망 기업의 9.4%가 승계문제 해결이 목적이었으며⁴⁾, 실제로 한샘 창업주는 친인척 가운데 후계자 부재로 IMM PE에 경영권을 양도(1.45조원, 21년)

자녀승계 계획 없을 경우 운영계획

전문경영인 영입 33.3 대각 29.2 패업 16.7 임직원 승계 12.5 자녀 외 친족승계 4.2 기타 4.1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매도 희망기업의 거래 목적 (21년)



자료: 한국 M&A 거래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원활한 가업승계 준비를 위한 자체 역량과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금융회사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니즈가 높은 편
 - 중소기업은 내부 전문인력(세무·회계·법률 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나 충분한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5), 지분이전 관련 세무·재무진단, 상속자금 마련 등
 - 은행을 통해 제공받고 싶은 서비스로는 **컨설팅**(63.1%), **융자제도 신설**(47.1%), **2세 경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43.9%) 등*을 가장 많이 응답⁶⁾
 - * 이밖에도 PEF 등 가업승계 자금조성과 자산관리 서비스(28.7%), M&A 중개·지원(26.1%) 순

³⁾ KPMG에 따르면 23년 기준 1억 유로의 가치를 보유한 기업의 지분 10%를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41%)은 분석대상 57개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한국 41.0%, 남아공 37.0%, 미국 34.8%, 독일 29.9%, 일본 26.9% 순)

⁴⁾ 후계자 부재(가업상속 포기)로 인한 매각 의뢰기업 비중: 16.2%(한국M&A거래소, 18년), 12.0%(IBK경제연구소, 16년)

⁵⁾ 국내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비상장회사에 해당 (출처: 중소기업연구원(2020),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⁶⁾ IBK경제연구소(2018),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가업승계 실태조사"

-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가업승계는 **기업금융**(IB)과 **WM**(PB·신탁·자산운용) **영업***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
 - * 예컨대 승계플랜 이행 과정에서 대출, 회사채 발행, 지분투자 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 인수기업의 IPO 또는 사업재편을 위한 M&A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이자·비이자수익을 수취
 - * 기업의 중대 터닝포인트인 승계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관리재산의 lock-in이 용이하고, 기존 CEO뿐 아니라 사주일가, 차기 CEO 및 임직원으로 영업기반을 연결·확장 가능

II. 국내 가업승계 정책지원과 최근 동향 및 평가

- ❖ 우리나라는 그간 친족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세제혜택 중심의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전개해 왔으나, 실효성이 미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
- ❖ 최근 들어 정부는 **신탁 활용**, 중소기업 대상 인수·합병시장 활성화 등 가업승계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

1. 친족승계

- 정부는 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를 두 축으로 '세제 인센티브 방식'의 가업승계 지원정책을 본격 시행
 - 이후 친족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담 경감의 보완책으로 **연부연납제도**(08년),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 면제**(19년), **납부유예제도**(23년) 등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도입
 - * 국세청 중소기업 맞춤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서비스(22년),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 확인 제도 등

[참고] 기타 친족승계 지원 조세제도

구분	주요내용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에 대한 상속세는 20년(10년거치+10년납부), 증여세는 15년 분할납부 허용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7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가업재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양도·상속·증여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 (※ 재차 가업승계시 계속해서 납부유예가 적용)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의3)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상속·증여시 20% 할증평가 조항 미적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30의5)	중소기업 창업 목적의 증여에 대해서는 특례 증여세율 적용

주: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시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특례와 납부유예방식 중 선택 가능 자료: 국세청, 국가법령센터,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엄격한 적용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하자 정부는 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제도를 대폭 개선
 - 최근 5년(18~22년)간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특례제도의 **연간 평균 이용 건수는 366건***으로 **국내 70대 이상 CEO 기업**(28,094개社)의 **1.3%**에 불과⁷⁾
 - * 건수 및 이용비율⁸⁾(21년 기준): 가업상속공제(97건, 0.6%), 증여세 과세특례(267건, 0.12%)
 - * 기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사후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응답비율은 각각 64.1%, 61.7%(한국무역협회)
 - 23년 세법개정은 기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의 ① **적용대상 확대**(중견기업 매출액 상한 4천억원→5천억원),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7년→5년)이 주요 골자
 - * 이 외에도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구간별 공제한도 상향(100억원)과 고용·자산관련 사후요건 완화를, 증여세 특례는 저율과세 과표 상한을 2배 확대(60억원→120억원)

〈표1〉 현행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특례제도

		(-, L0 10 10 11 x C	, i i i i i i	
구	분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증여세 특례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대	상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	한도	피상속인(증여자) 가업영위 기간별 한도 차등 적용 (10년이상 300억원, 20년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공제	l방식	가업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 한도내에서 가업영위 기간에 따른 한도(최대 600억원)(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 100%를 공제 일괄 기본공제(10억원) 후, 특례세율 적		
세	율	상속세율 (10~50%)	과세표준(120억원) 이하 10% & 초과시 20%	
피상	속인	지분 40%(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연속) 보유	
(증여자) 요건		일정기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	60세 이상 부모 (※ 대표이사 재직여부 무관)	
상속인 (수증인) 요건		①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 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③ 상속세 신고기한내 임원취임 및 2년내 대표취임	①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②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 ③ 증여일로부터 3년내 대표이사 취임	
	공통	[기간] 5년 & [업종]	대분류내 변경 허용	
사후	고용	근로자수(or 총급여) 5년 평균 90% 유지	×	
관리	자산	가업용 자산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상속·증여 지분 유지		지분 유지		

자료: 국세청, 기획재정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잇따른 제도 개선에도 불구 전면적 개편 요구가 제기되자, 기재부는 세부담 완화를 통해 친족승계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를 담은 "24년 세법개정안"의을 발표(7.25일)

⁷⁾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2024-6호

⁸⁾ 이용비율은 해당년도 상속세(증여세) 신고건수 대비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이용건수 비율로 계산

⁹⁾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후,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

- 첫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① 밸류업 및 ② Scale-up기업은 한도 상향(2배), ③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전액 공제하는 특례요건을 도입할 예정
 - *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현재까지 8개 시·도 내 23곳이 선정(※ 아래「그림」 참조)10
 - 3가지 유형(①~③)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매출액 요건 폐지)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사업용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포함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중견기업은 제외

〈표2〉 밸류업·Scale-up·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세부요건

구분	세부 요건
밸류업 기업	① 「기업가치 제고계획」공시 이행 ②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스케일업 기업	①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or R&D 지출액) 비중 5%(or 3%) & 연평균 증가율 5%(or 10%) ② 5년간 고용 유지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 ① 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특구에 소재, ② 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

자료: 기획재정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에 대해서는 24.7월부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및 종사 의무' 항목을 미적용 중¹¹⁾

대전광역시 경상분도 ● 포항(이차전지 소재) 🧧 메코프로그룹사 • 유성구(방산) *조건부지정 👗 ㈜베트랙이 • 상주(이차전지 소재) 🙀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 유성구(바이오) 🎺 ㈜리카켐바이오사이언스 • 구미(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 SK실트론(취) • 안동(바이오) 🏰 SK바이오사이언스(취 전북특별자치도 • 전주(탄소섬유) 🎥 ㈜효성첨단소재 • 익산, 정읍(동물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 🕅 대구광역시 김제(자동차 부품, 특장차) [조] ㈜대송 수성구(데이터센터, ICT/SW) O 달성군(이차전지 소재, 전기차 부품)
 ♠에에에프 전라남도 • 북구(전기차, 로봇 부품) (주) (주) 동보 ● 목포, 해남(해상풍력 터빈 등) ★ 베스타스 ● 광양만권(이차전지 소재) ☑ 포스코퓨처엠 부산광역시 순천(문화콘텐츠) ☐ ㈜로커스 • 여수(LNG터미널, 수소) 등록아엘엔지허브터미널(㈜ • 동구, 남구(금융) 🔬 ㈜코스콤, 부산BDX㈜ • 해남(데이터센터단지) *조건부 지정 🐚 SPC(삼성물산) 등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 서귀포(우주항공) 👬 한화시스템(취 • 고성(해상풍력 구조물) 👚 SK오선플랜트㈜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자료: 국무조정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¹⁰⁾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지방정부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기구, 23.7월 출범)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¹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25항(24.2월 신설)

- 둘째, 새로운 특례요건 도입과 함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50%→40%),
 최저세율(10%) 과표상한 확대(1억원→2억원 이하),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 상향(인당 5천만원→5억원, 10배)도 포함
 - * 야당은 '세부담 완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최고세율 인하 및 대폭적인 자녀공제액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
- 한편, 금융위가 신탁업 혁신방안(22년)을 통해 공론화한 '가업승계신탁 활성화를 위한 의결권 제한 규정 완화'* 내용은 현재까지 답보 상태
 - 가업승계신탁이 실질적인 가업승계 지원책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재 15%로 제한된** 의결권 행사 범위*를 100%까지 허용하는 것이 핵심
 - *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신탁업자의 신탁을 통한 우회적 지분취득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15%로 제한
 - 업계에서는 가업승계신탁의 이용 촉진을 위해 **신탁된 주식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요건** 적용 이슈 해소*, 기업오너를 유인할 실질적 혜택(ex. 민법상 유류분 특례 등)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
 -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나, ① 신탁회사의 주식 보유기간이 위탁자의 계속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②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분율도 위탁자 지분율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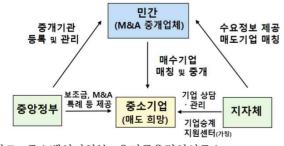
2. 기업승계(M&A 등)

- 중소벤처기업부는 09년부터 M&A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매도·매수기업 정보제공과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M&A 거래정보망)을 운영 중이나 성사율은 1%대로 저조12)
 - M&A 지원센터는 인수·합병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관·단체들(12개)¹³⁾로 구성되며, 무료 법률·회계 자문 등도 일부 제공하고는 있으나 **주로 매물정보 제공과** 소개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최종 성사단계로 연결시키는 중개기능은 다소 미흡¹⁴⁾
 - * M&A 지원센터 가운데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딜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24.4월부터 희망기업과 거래정보망 등록 자문기관들을 대상으로 가치평가·상담·자문 등 거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
 - M&A 거래정보망은 중소·벤처기업의 M&A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이 직접 매도·매수를 신청하거나 자문기관**이 매물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
 - * 한국평가데이터에서 신용평가를 완료한 법인기업만 이용 가능(※ 개인은 불가)
 - ** M&A 관련 상담·자문 등을 수행하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벤처캐피탈, 컨설팅사, Boutique 등으로 M&A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선정(24.6월 총 67곳)¹⁵⁾
 - 23.6월말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매도 희망기업 수*는 1,561**社¹⁶⁾
- 12) 매일경제(2023.7.31), "자식한테 물려줄 바에는 문 닫는다"...안 팔리는 중소기업 운명은"
- 1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국M&A거래소, 한국M&A협회, 벤처기업협회, 법무법인세움, 티에스인베스트먼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14) 박희원(2019), "한국과 일본의 중소기업 가업승계 현황 및 시사점", KDB 미래전략연구소
- 15) 최근 3년 중소기업 M&A 실적, 거래정보망에 등록가능한 매수·매도 매물 보유 수,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평가 후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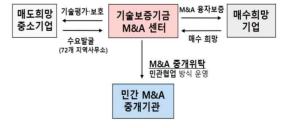
- 24년 상반기 중 정부 부처는 고령화 가속화, 후계자 부재 확산 등에 따라 친족승계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 대상 경영권 매각 지원방안을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앙 정부-지자체-민간 중개업체간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새로운 M&A 매칭 플랫폼 도입을 검토 중
 - 인수·합병 방식의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M&A 사전준비·컨설팅, 매칭·중개, PMI(인수후 통합)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합 지원
 -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5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고, M&A 외에 기술승계, 부분승계, 기업분할 등 다양한 방식의 승계방안을 고안할 계획으로 알려짐
 - 매칭 플랫폼의 경우, 정책금융기관 주도하에 민간 중개기관(증권사,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운영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과 안정적 승계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 M&A 전담센터를 신설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
 - M&A 전담센터는 기보 지역사무소를 거점으로 수요 발굴, 기술 보호,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매칭, 협상 지원 등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중개기관과 협력체계를 활용
 - 금년말까지 CEO가 고령인 기술중소기업 인수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제도'도 신설할 계획
 -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핵심 경쟁력(풍부한 매물정보) 제고 차원에서 기업은행과의 연계 체계도 구축·강화할 예정
 - * 기술보증기금(M&A 특례보증, 기술평가·보호 등)과 기업은행(인수금융 특별대출, 자문 등)의 강점을 토대로 상호 정보공유 및 지원 연계를 추진
 - * 일반 제조업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은행과 기술기반 중소기업 pool을 다수 확보한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업체계는 특히 신사업 전환 부문에서 강력한 경쟁우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민관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체계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M&A센터 운영(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관계부처 합동, 우리금융경영연구소

3. 종합 평가(일본과의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최근 우리나라 정부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제 혜택 뿐 아니라 신탁 활용도 제고, M&A 중개·주선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제시
 - 국내 금융회사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될 전망이며, 특히 **중기 고객** 신규유치나 기존고객 retention 측면에서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음
-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우호적 제도개선에 힘입어 일찍부터 가업승계신탁, 중소기업 M&A 중개·주선 서비스가 정착되었고, 정책금융기관과 주요은행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각적 대응체제가 작동 중
 -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와 MUFG은행은 60-80억엔 규모의 '꿈승계(夢承継) 펀드'를 07년이후 4차례 공동 조성
- 일본과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주도해 온 경영자들의 세대교체, 저출산·고령화의 급진전 등 산업구조·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아, 향후 국내의 제도적 환경도 일본과 유사하게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 * 중소벤처기업부도 일본 M&A 중개회사와 인수 성공기업과의 현지 미팅을 통해 지원현황, 애로사항, 제도개선 방향을 청취하는 등 일본 사례를 스터디하며 정책 수립과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에서 주효했던 가업승계 촉진 정책 가운데 아직 국내에 본격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는 ① 민법상 유류분 특례 규정, ② 가업승계 지원펀드 조성, ③ 후계자 부재 기업과 예비 창업가들 간 매칭 시스템, ④ 인수 보조금, ⑤ M&A 세제혜택 등이 있음¹⁷⁾
 - * 일본과 한국의 경영자 고령화 격차가 5~10세임을¹⁸⁾ 감안 시,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일본과 같이 휴·폐업 급증 등 후계자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상존

〈표3〉 한국 vs 일본 지원정책 주요 차이점

구분	한국	일본
민법상 유류분 특례 규정	X	O (08년~, 경영승계원활화법에 기초)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	상장·비상장	비상장
가업승계 지원펀드 조성	△ (17년~, IBK기업은행 단독, p.10-11 참조)	O (05년~, 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 공동)
후계자 알선 기능	△ (매칭시스템은 있으나, 후계자 알선 기능은 부재)	O (11년~, '후계자 인재뱅크' 운영)
지방 중소기업 인수 보조금	X	O (18년~, 젊은층 이주 시 최대 600만엔)
M&A 시 부동산취득세 등 경감	X	O (18년~, 26.3월까지 시행 예정)
자료: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7) 〈}표3〉 및「붙임3」참조

¹⁸⁾ CEO 평균연령(22년): 일본(제국데이터뱅크: 60.4세, 도쿄상공리서치: 63.7세) vs 한국(중소벤처기업부: 제조업 55.3세, 서비스업 53.0세)

붙임1

가업승계 개념 및 유형

- 가업승계¹⁹⁾란 기업의 경영상태가 지속되도록 차세대 경영자에게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의미
 - 가업승계에는 창업정신, 경영 노하우, 거래처·인맥 등 무형자산의 승계도 포함되므로 충분한 시간(짧게는 2~5년, 통상 10년)을 가지고 종합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는 특성을 보임
 - *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자 사망 등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영권 확보 곤란 등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가업승계는 통상 후계자의 속성에 따라 친족승계, 친족외 승계, 기업승계(M&A 등)로 구분
 - 협의로는 자녀·친인척 등 혈족에게 승계하는 친족승계를 지칭하나, 광의로는 전문경영인 또는 회사 임직원에게 승계하는 친족외 승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기업승계까지를 포괄
 - 승계대상에 따라 소유권 승계(ownership succession)와 경영권(management) 승계로도 구분
 - * 일반적으로 친족승계와 기업승계는 소유권과 경영권 승계가 동반되는 반면, 전문경영인·임직원 등 친족외 승계의 경우 대부분 경영권만 이전

1. 친족승계

- 여전히 자녀승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승계포기와 인구구조·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른 후계자 부재로 최근 들어 비중이 감소
- (장점)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보유한 가족 구성원이 기업을 통제하므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나 체계적인 가업승계 준비기간 확보에 용이
 - 가족에게 경영철학이 전승되고 장기적 안목의 경영도 가능*해 경영(창업)이념의 유지에 유리
 - * 이해관계자(가족)들이 승계 추진과정에서 수반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비교적 손쉽게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후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경영수업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가능

¹⁹⁾ 경영승계, 기업승계, 사업승계 등과 혼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로 지칭되고 있어 주로 '가업승계'라는 용어로 사용. 기업승계의 경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M&A 등의 승계방식을 별도 구분해 '기업승계'로 명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사업승계'라는 용어로 통용

- (단점) 가족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연고주의'로 이어질 경우,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
 - 승계 후보자가 혈족 내로 제한된다는 특성 상 경영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후계자가 기업을 물려받게 되거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재산분쟁(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발생 가능성

2. 친족외 승계

- 임직원 중 역량(경영능력·충성도·인품·리더십 등)을 갖춘 인물에게 승계(임직원 승계)하거나 사내에서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 외부에서 적임자 (전문경영인)를 영입
- (장점) 친족 외부에서 우수한 역량을 갖춘 후계자 물색이 가능하며, 장기근속 임직원에게 승계(임직원 승계) 시 경영의 일관성 유지에 용이
- (단점) 친족승계에 비해 강력한 경영의지를 가진 인물 확보가 쉽지 않고, 후계자들이 주식 취득 등 승계과정에 소요되는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
 -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책임경영이 약화될 우려나 후계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측면에서 취약
 - * 기존 경영자가 기업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경우 보증 인계가 어려워 승계에 차질이 발생
 - 친족승계 시 적용되는 상속세 경감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족
 - * 친족외 승계 촉진을 위해서는 기업 임직원도 상속인으로 간주하는 일본과 같이 상속인 요건에 전문경영인과 임직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²⁰⁾

3. 기업승계(M&A 등)

- 합병, 주식양도, 주식교환,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상황별 적합한 기법을 선택 가능
- (장점) 가족임직원 등 기존 관계망 내 적합한 후보자가 없을 때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외부에서 폭넓게 후보자를 물색 가능하며, CEO는 회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에 유리
 - 친족 승계자가 없더라도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어 오랫동안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고유의 원천기술 사장 방지에 이점²¹⁾
 - 성장 둔화와 과도한 경쟁으로 성장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도 활용

²⁰⁾ 한국은행(2011), "일본의 기업승계 현황과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2020),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4),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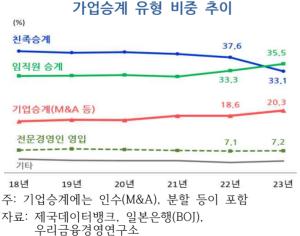
²¹⁾ 남유선(2019), "기업승계를 위한 M&A 활성화 방안: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 (단점) 기업매각은 국내 중소형 인수·합병시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성사 가능성이 낮고, 성사되더라도 소유권과 경영권의 급격한 교체를 수반하게 되므로 회사 내부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상존
 - 중소기업 CEO들의 경우,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M&A 딜 진행을 위한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정서적 거부감이 큰 편
 - 특히 중소기업 대상 소규모 딜은 사업성(수익성)이 낮아 자문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거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시장조성·지원 기능도 미흡
 - * 스몰캡의 경우 매도자 요구조건(매각가격, 고용유지 등)을 충족시키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특히 비상장 회사는 매각-매도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적정 기업가치 산출이 더욱 까다로움

붙임2

일본의 가업승계 및 중소기업 M&A 현황

-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5년 70세 이상 경영자 비중은 약 60%(254만社)에 달하고, 이중 절반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전망
 - * 23년 전체 CEO의 평균연령은 60.5세이며, 경영권 교체시점은 평균 68.7세로 집계(제국데이터뱅크)
- 최근 5년간 친족승계의 감소*로 유형별 가업승계 비중(23년)은 임직원 승계(35.5%), 친족승계(33.1%), 기업승계(M&A 등, 20.3%), 전문경영인 영입(7.2%) 순²²⁾
 - * 19~23년 중 유형별 증가율(CAGR): M&A 등 기업승계(4%), 임직원 승계(3%) vs 친족승계(-4%)
 - 전문경영인 영입 선호가 높은 국내*와 달리, 일본은 실제 임직원 승계 비중이 높음
 - * 우리나라의 경우 친족승계의 대안으로 전문경영인(33.3%), 기업승계(29.2%), 임직원(12.5%) 순으로 승계방법을 고려
- 사업승계·인계지원센터(p.17「붙임3」참조)와 중소기업 특화 민간 전문 중개기관 3社*의 합산 M&A 거래실적은 20년 2,139건**으로 13년(215건)대비 10배 가까이 급성장했으며, 잠재수요(연간 8만건)를 감안 시 딜 규모의 비약적 확대가 예상²³⁾
 - * Nihon M&A Center(91년), Strike(97년), M&A Capital Partners(05년 설립)
 - ** 일본은행(BOJ)에 따르면 전체 등록된 민간 M&A 지원기관의 21년 중소기업 M&A 실적은 3,403건
 - 일본기업의 M&A를 통한 매각 사유* 가운데 가업승계(48.0%)가 1위를 차지(중소기업청)
 - * 가업승계(48.0%), 고용유지(42.7%), 영업상황 악화(36.8%), 사업확장(28.4%) 순 (18년 기준)
 - 후계자 부족에 따른 M&A 수요 급증, 관련 세제혜택 강화(18년) 등 우호적 환경에 힘입어 중소기업 특화 M&A 전문중개기관들의 실적도 가파른 개선세*를 시현 중
 - * Nihon M&A Center는 업계 최초로 06년 상장했으며, 09년 이후 연평균 매출액증가율은 20.5%²⁴⁾





주: 상위 3社는 Nihon M&A Center, Strike, M&A Capital Partners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2) 제국데이터뱅크, "전국 후계자 부재율 2023 동향조사"
- 23) M&A를 통한 가업승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약 30만 개로 추산(일본 중소기업청)
- 24) Nihon M&A Center(2023.4, 2023.11)

붙임3

일본의 가업승계 지원정책

정책	주요 내용
「사업계속펀드」 조성 (05년)	•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SMRJ) ²⁵⁾ 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가업승계 지원 펀드를 조성 - (투자대상)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또는 해당기업 인수희망 업체 - (펀드형태) GP(운용)은 민간금융회사가 담당 & SMRJ는 LP로 참여(출자한도 50%) - (지원내용) ① 오너로부터 지분 인수 후 자금지원, ② GP에 의한 경영지원, ③ 가업승계 문제 해결·경영혁신·신사업 개발 등 지원(SMRJ)
「중소기업	 유류분²⁶⁾ 특례 민법상 특례조항 신설 → 후계자 경영권 및 재산권 보호 목적 생전증여 주식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에 따른 주식 분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산을 후계자에게 집중 또는 생전증여 주식의 평가액을 미리 고정시켜 후계자의 노력에 따른 주가 상승분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 상속세 납부 유예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제정 (08년)	- 후계자(친족) 취득분의 80%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 - 신고기간 후 5년간 요건 충족시 납부유예 지속 & 5년 경과 후에도 납부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증명하면 납부유예 지속
	• 금융지원 - 신용보증협회의 후계자 및 인수기업 대상 보증액 별도 설정 - 정책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 강화 * 일본정책금융공고(JFC),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공고(ODFC) 등
「중소기업 승계사업 지원계획」신설 (09년)	• (금융지원 강화) - 일본정책금융공고(JFC)의 승계기업 대상 신용보증 확대 및 특별대출 제공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SBIC)의 후계자 지분율이 낮은 기업의 주식보유 한도 확대
「사업인계지원 센터」설립 (11년)	 (조세혜택) 인증 중소기업 대상 승계에 따른 등록 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경감 전국 주요 상공회의소(48곳)에 설치되어 가업승계 관련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 상주한 세무·회계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무료상담과 솔루션 제공 (Case별 보조금 등 지원제도에 대한 연계 컨설팅 포함) '후계자 인재은행'을 통해 후계자가 부재한 매도기업과 창업지망 기업가를 매칭
「사업승계 실시 집중기간(~27년)」 지정 (18년)	 상속세 납부유예 비율 확대 (80%→100%) 납부유예 대상 주식수 등의 상한(주식 총수의 최대 2/3) 폐지 젊은층이 지방 중소기업 인수 시 보조금(최대 600만엔) 지급 사업양도의 경우 등록 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인하

자료: KDB미래전략연구소, IMF27), 일본 중소기업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25) Small & Medium enterprises and Regional innovation Japan
- 26)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
- 27) GEE HEE Hong, Arata Ito, Yukiko Uneno Saito, Anh Thi Ngoc Nguyen(2020), "Structural Changes in Japanese Firms: Business Dynamism in an Aging Society", IMF Working Paper